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2010099(본소), 2020나2010105(반소) 판결
[공사대금,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2010099(본소), 2020나2010105(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102247, 2020가합10022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김익건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오

담당변호사 김준영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선 고 2020. 10. 28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102247(본소), 2020

가합100223(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97,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31. 까지는 연 1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3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8. 24. 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일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예비적으로 330, 000, 000원 및이 사건반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따로 판단하는 일부 주장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원 고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모두무효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 1내지 4, 11, 12호증의 각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합쳐 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하도급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정경근 판사 최은정

1)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령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등 참조),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본소뿐만 아니라 반소에 관한 추가 주장으로 선행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청구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